

안양시의회 포상 조례

제정 2017. 10. 17. 조례 제2864호
일부개정 2021. 9. 29. 조례 제3356호
전부개정 2023. 3. 31. 조례 제348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포상은 안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고 한다) 의정 발전,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,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안양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행한다.

제4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으로 구분한다.

제6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.

1. 의정 발전,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의회 및 안양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3. 졸업예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감사장) 감사장은 의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수여한다.

제8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.

1. 학술, 예술,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2.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
3. 의회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
제9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

수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점자 및 외국어 표기)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,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,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.

② 점자에 대한 점역,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포상절차) ① 포상에 대한 추천권자는 의회 의원, 의회사무국장, 각급 기관 및 단체장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,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제6조제3호에 의한 표창장 또는 제8조에 의한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,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 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의 취소)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공적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

2. 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중포상의 금지)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.

제15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의장은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16조(포상사실의 확인) ① 포상수상자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.

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.

부칙 <2023. 3. 31. 조례 제3485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표 창 장

주소 또는 소속
직 성명

(표 창 문)

년 월 일

안 양 시 의 회 의 장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감 사 장

주소 또는 소속
직 성명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안 양 시 의 회 의 장 (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제	호
상	장
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	
(상 문)	
년 월 일	
안 양 시 의 회 의 장 (인)	

[별지 제4호서식]

공 적 조 서

(1) 성명	(한글)										(한자)									
(2) 생년월일									-	(3) 군번 (군인의 경우)										
(4) 등록기준지 (외국인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
(5) 주소																				
(6) 직업					(7) 소속															
(8) 직위					(9) 등급(직급·계급)										(10) 공적기간					
																년		월		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				(12) 공적분야															
추천자																				
(13) 소속						(14) 직위														
(15) 직급						(16) 성명	(인)													
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
추천관					성명					(인)										

주요학력 및 경력			
(17) 연 월 일	(18) 이 력	(19) 연 월 일	(20) 이 력
과거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기록)			
(21) 연 월 일	(22) 내 용	(23) 연 월 일	(24) 내 용
(25) 공 적 사 항			

공 적 기 간 산 정 조 서

1. 소 속 :

2. 직 급 :

3. 성 명 :

4. 공적기간 산정내역

근무기관	직 위	근무기간	공 적 관 련 업 무	공적기간
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확 인 자 : ○ ○ ○ ○ ○ ○ 장 ○ ○ ○ (인)

[별지 제5호서식]

공 적 심 사 의 결 서

☐ 포상구분:

☐ 심사대상자

주소 또는 소속	성 명	공적내용	심사결과	
			가	부

위와 같이 의결함

년 월 일

안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

위 원 장

부위원장

위 원

위 원

위 원

위 원

(인)

(인)

(인)

(인)

(인)

(인)

[별지 제6호서식]

포 상 대 장

번 호	연 월 일	수 상 자			종 별	공적개요	비 고
		소속(주소)	직 위	성 명			

[별지 제7호서식]

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				
신청인	소 속		직 급	
	성 명		연락처	
	생년월일			
	주 소 (포상당시)			
포상내역	포상구분			
	포상년월			
	공 적			
신청사유				

위와 같이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함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 또는 서명)

안양시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8호서식]

포상수여 사실확인서		
인 적 사 항	성 명	
	생년월일	
	주 소 (포상당시)	
포 상 내 역	포상번호	
	포상구분	
	포상년월	
	공 적	
위와 같이 포상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		
년 월 일		
안 양 시 의 회 의 장 직인		
【확인자】 소속 : 직급 : 성명 : (연락처:○○○○-○○○○)		